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42
----------	------

2024년 2월 29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 정 일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6.30. 자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시설규모 : 1,510.75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2027.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6백만원(20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2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1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재위탁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제322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1640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재위탁	-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개관일자 : 2015.06.03. - 시설규모 : 지상4층 (333.37㎡)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734,631천원
1641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재위탁	- 소 재 지 :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15.01.01. - 시설규모 : 지상 2층, (483.12㎡)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843,882천원
1642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 소 재 지 : 성북구 길음로7길 20 - 개관일자 : 2015.4.1. - 시설규모 : 지하1, 지상2 일부(1,510㎡)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05,633천원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되고,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등으로,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험(노하우 등)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3개소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탁틴내일’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6.30.)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2024.7.~2027.6.)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개관일자: 2015년 4월 1일
- 시설규모: 1,510.75m²
-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 위탁기간: 3년(2024.7.1.~2027.6.30.)
- 선정방식: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306백만원(20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법률(「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는 총 7개소로,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중랑성문화센터)는 ‘사단법인 탁틴내일(이하 “탁틴내일”)’이 1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인력과 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립성문화센터 현황 〉

(단위 : m²)

시설별	면적	소재지	개관일	위탁기간	운영단체
아하!	763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1.01.01.	‘21.12.07.~’24.12.06.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광진	219	광진구 광장동	2007.11.22.	‘23.07.01.~’25.06.30.	(사)홍사단
창동	183	도봉구 창동	2007.10.18.	‘23.07.01.~’26.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드림	210	양천구 신월동	2012.10.01.	‘22.07.01.~’25.0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성북(중랑)	1,510	성북구 길음동	2015.04.01.	‘22.07.01.~’24.06.30.	(사)탁틴내일
동작	340	동작구 신대방동	2016.05.19.	‘23.07.01~’25.06.30.	(사)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은평	143	은평구 녹번동	2020.01.01.	‘22.12.16.~’24.12.15.	(사)탁틴내일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14.12.10. ~ 2017.11.30. : 신 규 (사)탁틴내일
- 2017.12.01. ~ 2019.06.30. : 재계약 (사)탁틴내일
- 2019.07.01. ~ 2022.06.30. : 재위탁 (사)탁틴내일
- 2023.07.01. ~ 2024.06.30. : 재계약 (사)탁틴내일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프로그램명)
교육분야 3개사업 9개프로그램	체험관 성교육(①체험관 성교육, ②장애 체험관 성교육, ③양육자 및 지도자 대상 체험관 성교육, ④열린체험관, ⑤모두를 위한 월경이야기, ⑥성폭력 재범 예방교육), 찾아가는성교육(①비장애 찾아가는 성교육, ②장애 찾아가는 성교육, ③양육자 및 지도자 찾아가는 성교육), 장애학생 성행동 종합지원
문화분야 3개사업 4개프로그램	캠프(①사춘기 캠프, ②가족 캠프), 캠페인(우리동네 달성이), 축제(S-SAY 축제)
조직분야 5개사업 9개프로그램	자문회의·간담회(①운영·인사위원회, ②장애 성행동 자문회의), 자원활동가 양성(교육활동가 운영), 네트워크 및 대외활동(①지역 네트워크, ②공동협력사업), 청소년 동아리(장애청소년동아리), 기타(①홍보, ②프로그램 개발, ③직원역량강화)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약직
정원	5	5	-	1	-	1	-	3	-	-
현원	5	5	-	-	1	-	1	3	-	-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현황 〉

(단위:천원)

구분	면적(m ²)	용도
계	1,510	
2층	147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창고
지하1층	595	워크숍룸, 강사실, 대기실, 다목적룸, 교육체험관1, 교육체험관2
전용·공용면적	767	주차장, 복도, 화장실 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중랑성문화센터)는 중랑구(7호선 용마산역 역사 내)에서 성북구(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여 명칭을 변경(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하였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과 행정 업무상 오인이 있을 수 있고, 본 동의안에서도 대상을 명쾌히 특정하지 못하고,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바, 조례상 명칭과 실사용 명칭의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능률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 수탁기관이 장기간 수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혁신과 개선 등이 도외시되어, 성과보고서 여러 분야에서 ‘미흡’과 ‘노력 필요’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운영방식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중랑성문화센터는 운영성과를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5천 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중 청소년의 연평균 이용은 약 1만명 수준으로,
- 서울시 학령인구(6~21세)가 110만 여명이라는 점, 시립과 구립 성문화 센터는 8개소(시립7, 구립1)인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매우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이 설립시 기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여부, 사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장기적 사업계획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성과 〉

(단위:명)

	총계	청소년	성인	어린이
최근3년 평균	15,882	10,623	4,968	291
최근3년 합계	47,646	31,869	14,903	874
2021년	16,305	11,030	5,088	187
2022년	18,825	12,494	6,016	315
2023년11월	12,516	8,345	3,799	372

※ 비고 : 2023년 본센터 이전으로 인테리어 공사로 이용인원이 타년도 대비 소폭 하락함.

〈 서울특별시 인구 통계 〉

(단위:명, %)

서울시 총 인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9세-24세)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0세-18세)		학령인구 (6~21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9,386,034	1,354,699	14.4%	1,163,362	12.4%	1,165,539	12.4%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청소년인구 통계”, 자료갱신일 : 2024.01.25.)

- 그간의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 또는 단편적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실적 위주의 성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어, 청소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 성문화센터는 횡수나, 인원수, 학교 수로만 성과를 제출하고 있고,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성 미흡, 확장성 미흡, 교육대상자의 반응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인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과 성문화 조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건강, 신체의 발달, 인적관계, 가치, 권리, 문화, 젠더, 폭력·안전,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바람직한 성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성문화센터의 교육 및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성교육의 변천 및 특징

- 1982년 이전의 성교육은 대부분 순결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2년부터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5년)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년)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게 되었음.
- 학교 내 성교육은 재량수업, 보건수업, 일반수업(체육시간, 생물시간, 가정시간 등) 중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문화센터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실시되나, 초빙교육도 1년 1회~2회에 한정되며, 상호 소통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생물학적, 발달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내 성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2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6.30.자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 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시설규모 : 1,510.75㎡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2027.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6백만원('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2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1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연희 (☎ 2133-4128)